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2. 3. 7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2. 3. 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2. 3.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제안이유

○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의 방치 또는 무단 소각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책임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 토지·건물 안에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실시함(안 제4조 및 제4조의1)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두께를 강화하고 묶는 끈의 길이 연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반용 봉투의 10리터, 20리터의 색상을 흰색에서 녹색으로 조정함(안 제1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두께나 묶는 끈의	○ 쓰레기 배출시나, 수거시 봉투가 얇아 찢어

길이를 사용에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인가?

- 봉투의 두께를 강화할 경우 때때로 분해가 몇 년 정도 걸리겠는가?
- 봉투의 색상을 바꾸는 이유는?
- 녹색이면 녹색이지 옅은 녹색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두께를 강화하고 묶는 끈의 길이를 길게하고자 하는 것임

- 분해되는 기간은 종전봉투와 같으며 공업진흥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임
-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현재 흰색을 옅은 녹색으로 바꾸고자 함
- 옅은 녹색도 내용물이 보이지 않으며, 색상 농도는 공진청에서 규정해 준 사항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5호
의결년월일	2002. 3. 20 (제94회)

제출년월일 : 2002. 3. 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의 방치 또는 무단 소각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책임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토지·건물 안에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실시함(안 제4조 및 제4조의1)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두께를 강화하고 묶는 끈의 길이 연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반용 봉투의 10리터, 20리터의 색상을 흰색에서 녹색으로 조정함(안 제 16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기간 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제12조 규정의 처리기준 등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의1(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유선)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법 제12조 규정의 처리 기준 등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4항의”을 “제3항의”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용봉투의 10리터, 20리터의 색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옅은 녹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1”

[별표3]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제16조 관련)

(일반용·음식물쓰레기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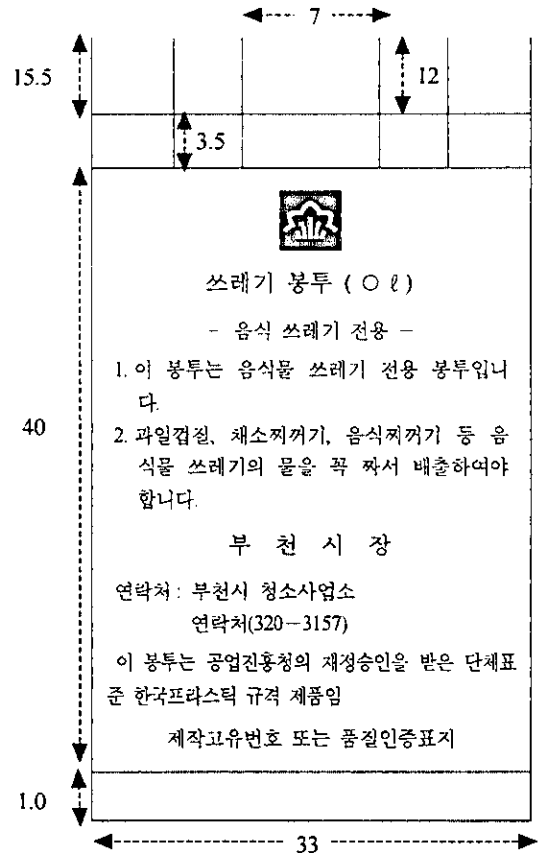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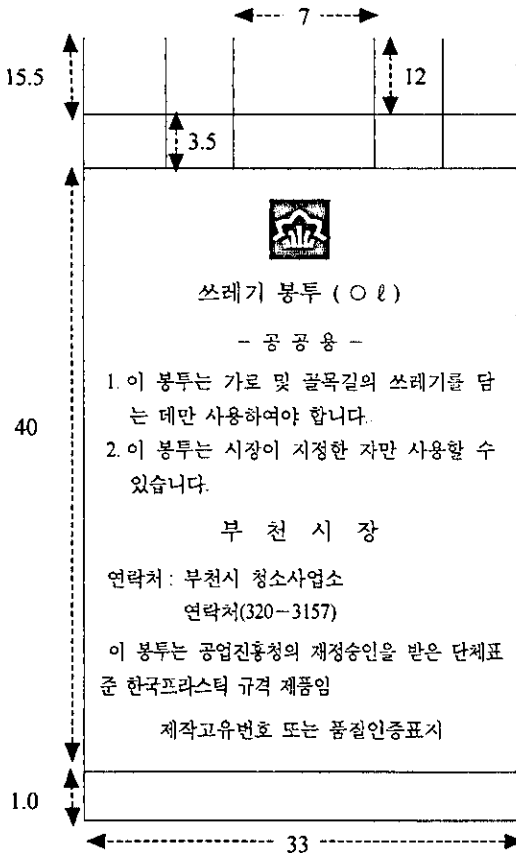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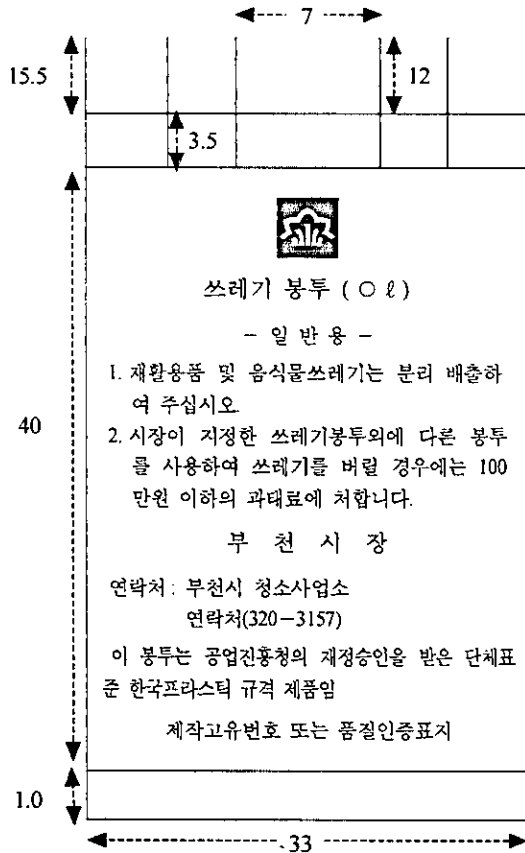
용량 (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mm)		담는 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 (cm)	묶는 끈 폭 (cm)	묶는 끈 길이 (cm)
			선형저밀도	고밀도			
3	39.5	22	0.030	0.025	12	5	9
5	46.5	26	0.030	0.025	13.2	6	10
10	56.5	33	0.030	0.025	15.5	7	12
20	69.5	42	0.035	0.030	18.4	8	15
30	78.5	48	0.035	0.035	20.3	10	17
50	91.5	56	0.045	0.040	22.8	12	19
100	113.5	71	0.055	0.050	27.6	15	23

“별지 2”

[별표4]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제17조 관련)

(단위 : cm)



※ 10ℓ 기준 봉투 제작 사양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청결유지 등)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p>	<p>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기간 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제12조 규정의 처리기준 등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p>제4조의1(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유선)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법 제12조 규정의 처리 기준 등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p>
<p>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③ (생략)</p>	<p>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③ (현행과 같음)</p>

(신설)

현행				개정안							
[별표3]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 (일반용·음식물쓰레기 전용)				[별표3]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제16조 관련) (일반용·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호칭 두께(mm)		봉투 용량 (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mm)		담는 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 (cm)	묶는끈 폭 (cm)	묶는끈 높이 (cm)
		선형저밀도	고밀도				선형저밀도	고밀도			
3	22×39.5	0.025	0.020	3	39.5	22	0.030	0.025	12	5	9
5	26×45.5	0.025	0.020	5	46.5	26	0.030	0.025	13.2	6	10
10	33×56.5	0.025	0.020	10	56.5	33	0.030	0.025	15.5	7	12
20	42×69.5	0.030	0.025	20	69.5	42	0.035	0.030	18.4	8	15
30	48×78.5	0.030	0.030	30	78.5	48	0.035	0.035	20.3	10	17
50	56×91.5	0.040	0.035	50	91.5	56	0.045	0.040	22.8	12	19
100	71×113.5	0.050	0.045	100	113.5	71	0.055	0.050	27.6	15	23
※ 봉투규격은 묶는 부분 등을 포함 (비고) 1. 본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는 여분이 포함된 규격 인 2. 여분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으며,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되었음 (단,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별표4] (현 행)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

여기를 묶어 주세요!



쓰레기 봉투 (O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부 천 시 장

연락처 : 부천시 청소사업소

연락처(650-2251)

이 봉투는 상공자원부의 재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한국프라스틱 규격 제품임

제작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여기를 묶어 주세요!



쓰레기 봉투 (O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 천 시 장

이 봉투는 상공자원부의 재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한국프라스틱 규격 제품임

제작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여기를 묶어 주세요!



쓰레기 봉투 (Oℓ)

- 음식물쓰레기 전용 -

과일껍질, 채소찌꺼기, 음식찌꺼기 등의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만을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부 천 시 장

연락처 : 부천시 청소사업소

연락처(650-2251)

이 봉투는 상공자원부의 재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한국프라스틱 규격 제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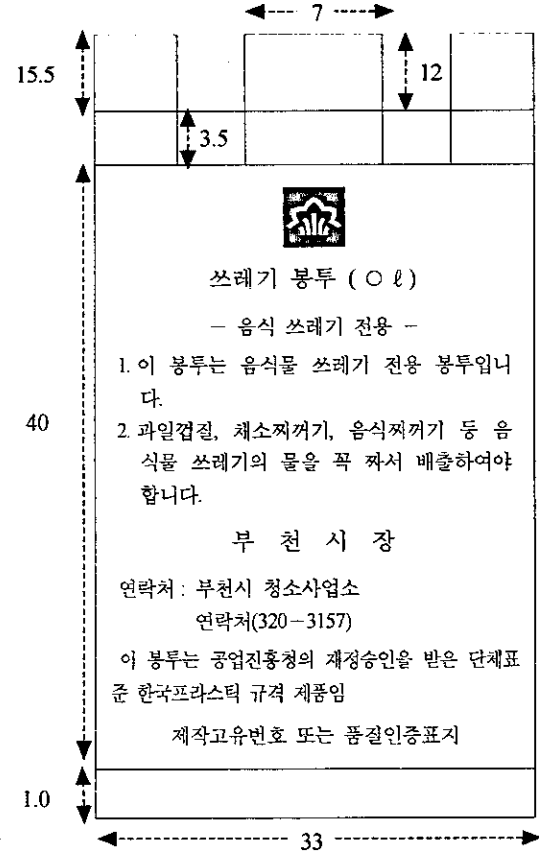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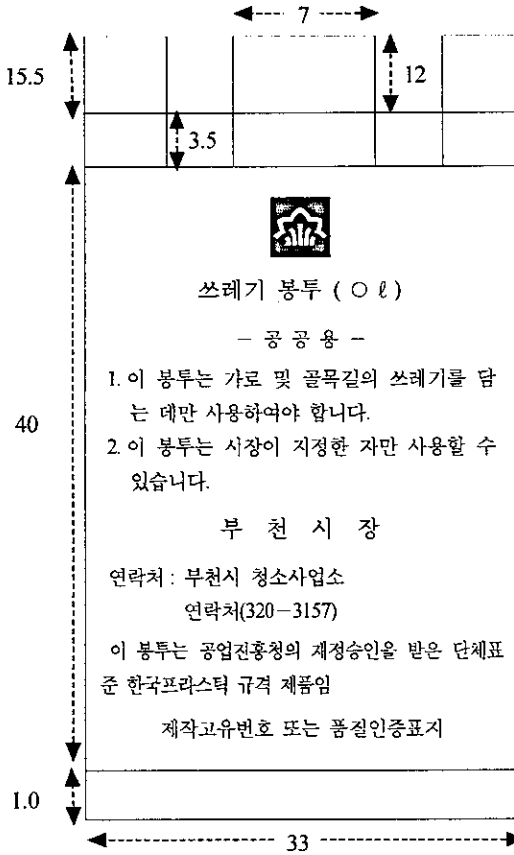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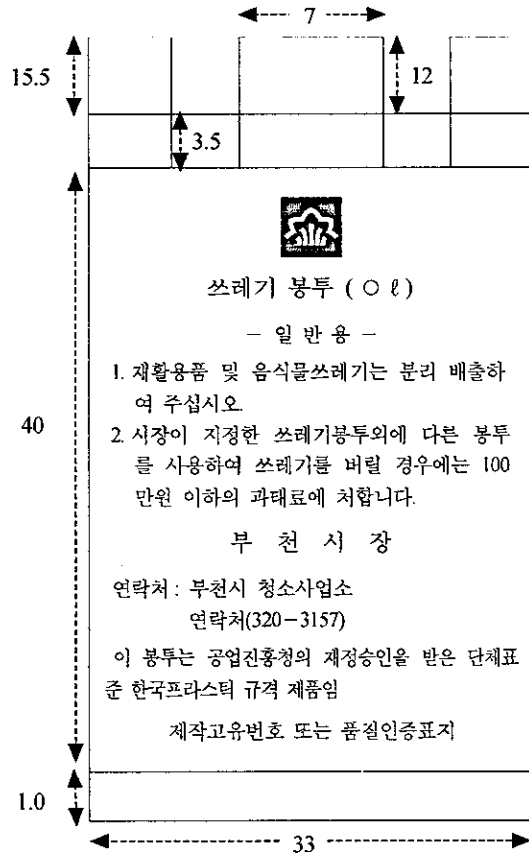
제작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지 2”

[별표4] (개정안)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제17조 관련)

(단위 : cm)



※ 10ℓ 기준 봉투 제작 사양임